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규정(안 제1조)

- 1 -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 설명(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제2장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제5조(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3장 지원의 유형과 범위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경비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6.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7.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8.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9.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10.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11.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2.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3.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5 -

제4장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군·구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군·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6.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군·구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군·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6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시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장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 비용 추계결과

가. 예산항목별 추계

(단위 : 천원)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470,000	700,000	710,000	720,000	740,000	3,340,000
인건비	235,000	350,000	360,000	370,000	380,000	1,695,000
운영비	64,000	115,000	120,000	120,000	130,000	549,000
사업비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시설비	141,000	35,000	30,000	30,000	30,000	266,000

예산편성항목

-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퇴직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복리수행경비 등
- ▶운영비 : 출장비,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 ▶사업비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의 성격별·유형별 편성
(권익옹호, 의사소통지원등)
- ▶시설비 : 사무실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직책보조비, 회의비

나. 추계근거 : 「2016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인건비 : 전체 예산의 50%이내 편성(16 예산 470백만원, 편상가능액 235백만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예산의 30%이내에서 사무실 시설개선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16 예산 470백만원, 편상가능액 141백만원)
- ※ 2차 사업년도 이후 : 예산의 5%이내에서 편성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시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6년)	2차년도 (‘17년)	3차년도 (‘18년)	4차년도 (‘19년)	5차년도 (‘20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235,000	350,000	365,000	370,000	380,000	1,700,000
	소계	235,000	350,000	365,000	370,000	380,000	1,700,000
세출	민간위탁금	235,000	350,000	365,000	370,000	380,000	1,700,000
	소계	235,000	350,000	365,000	370,000	380,000	1,700,000
재원 조달		470,000	700,000	730,000	740,000	760,000	3,400,000
국 비		235,000	350,000	365,000	370,000	380,000	1,700,000
시비	소 계						
	일반회계	235,000	350,000	365,000	370,000	380,000	1,7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4. 작성자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